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무원 고충심사를 담당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확대,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 명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 등 공무원 고충처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

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

다.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

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8.~2021. 12. 20.)

3) 행정규제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⑦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⑦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료법」제 2조에 따른 의료인

⑦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4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⑥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심

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이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14일 이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3. (현행과 같음) 4.「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⑥ (생 략) <신 설>	⑥ (현행과 같음) ⑦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3. (현행과 같음) 4.「의료법」제 2조에 따른 의료인
⑥ (생 략) <신 설>	⑥ (현행과 같음) ⑦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4.「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⑤ (생 략)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7조의2(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이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14일 이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연 락 처	(044) 201 - 8658